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123
----------	-------

발의연월일 : 2026. 1. 16.

발 의 자 : 김재원 · 강준현 · 박정현
황명선 · 한창민 · 서왕진
황운하 · 최혁진 · 손 솔
차규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정부의 출연금,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주의 출연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사업의 기반이 되고 있으나, 최근 기금의 수입 정체와 재원 고갈로 인해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문화예술 지원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금 재정의 불안정은 국가의 문화예술 진흥정책 추진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을 추가적으로 조성하여 기금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문화예술 진흥 사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

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8조제10호·제1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재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24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21호)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연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납입된 몰수 또는 추징금

6. 「저작권법」 제25조제10항제8호에 따라 출연된 미분배 보상금

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제18조제10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문화예술 분야 저작물 이용 활성화 및 공정한 이용을 위한 사업

11. 공연산업 진흥 및 건전한 공연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①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5. 「공연법」 제42조의2제2항 에 따라 납입된 몰수 또는 추 징금
<u><신 설></u>	6. 「저작권법」 제25조제10항 제8호에 따라 출연된 미분배 보상금
<u><신 설></u>	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 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 수익금
5. (생 략)	8.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 -----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u><신 설></u>	10. 문화예술 분야 저작물 이용 활성화 및 공정한 이용을 위 한 사업
<u><신 설></u>	11. 공연산업 진흥 및 건전한

<u>10.</u> (생 략)	<u>공연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u> <u>12.</u> (현행 제10호와 같음)
------------------	---